

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 
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

---

# 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 서정호

#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의의원 : 오영탁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23년 11월 17일
- 회부일자 : 2023년 11월 17일

3. 제정이유

- 「자치경찰사무와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령)이 개정('23.5.9.)됨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행할 수 있는 서면 심의의결 대상과 원격영상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서면 심의·의결 대상 규정 신설(안 제12조)
  - 일상적 반복적 안건으로 경미한 내용, 재난발생으로 인한 불출석,
  - 그 밖에 위원장이 인정한 특별한 사정
- 원격영상회의의 운영 규정 신설(안 제13조)
  - 원격영상회의 방식(일부 대면)으로 위원회를 할 수 있으며, 원격영상회의 참석도 예산의 범위 내 수당 지급이 가능함

## 5. 검토의견

### 가. 개정의 필요성

- 「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는 상위법인 「자치경찰사무와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운영해 왔음.
- 2023년 5월 9일 「자치경찰사무와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령)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례의 개정 필요성이 인정됨.

### 나. 주요내용

- 본 개정안은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서면 심의의결 대상 규정을 안 제 12조를 신설하였으며,
- 원격영상회의 방식(일부 대면)으로 위원회를 할 수 있으며, 원격영상회의 참석도 예산의 범위 내 수당 지급이 가능하도록 안 제13조를 신설하였음.

### 다. 종합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자치경찰사무와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령)이 개정됨에 따라 「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 개정을 통해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서면 심의의결 대상 규정 신설하고, 원격영상회의의 운영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됨.

붙임: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